

# 인쇄물수출 이렇게 합시다 ③

## - 대금지불방법 및 회수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수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인쇄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들 중 상당수는 해외시장 개척·인쇄물 수출과 관련한 사전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재)서울인쇄센터가 발간한 '인쇄 수출 매뉴얼'을 시리즈로 연재,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 이어)

대금 지불조건 및 회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렵게 성사시킨 계약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적기에 선적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품 하자가 발생하거나 대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일반적인 수출조건인 L/C와 지불방법 그리고 특히 인쇄물 수출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 신용장(L/C)제도

신용장은 국가 간의 상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금지불방법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신용장 방식은 상호 간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L/C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선적한 후 L/C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함(네고)으로써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이다. 즉, 신용장상의 조건을 이행하면 취소할 수 없이 L/C 개설은행에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제품 또는 전제품을 하청 생산할 때는 양도가능조건(transferable)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자는 Local L/C를 받아서 조건에 맞게 서류를 갖추면 된다. 또 지불시기에 따라 즉시 지불조건(at sight), 일정기간 외상조건(usance)으로 개설하기도 한다.

현재 인쇄물 수출 시 L/C가 사용되는 빈도가 점차 적어지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대방에 대한 신용이 불확실하면 이를 대비하여 L/C 방식을 지불조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L/C와 L/C상에 나오는 각각의 역할과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L/C 수령 : 어드바이징 은행에서 L/C 내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음. 이때 어드바이징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수함. 사전에 바이어로부터 팩스로 L/C 사본을 받기도 함.
- ② L/C 확인 후 L/C 조건(특히 요구하는 문서나 발행은행의 신용도 등)을 검토 한 후 생산을 개시한다.
- ③ 신용장 기일내 생산·통관·선적 후 L/C상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통상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원본 3부, 상업송장 3부, 포장증명서 3부는 필수적이며 기타 검수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요구하기도 함)와 은행 소정양식의 환어음을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하면 된다.
- ④ 특히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선사에서 선하증권을 가진 자를 화주로 보기 때문에 L/C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기재되도록 선사에 의뢰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⑤ L/C는 문서로써 결제하기 때문에 L/C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틀리게 작성하는 경우 L/C discrepancy가 발행하여 네고은행에서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행은행에서 네고은행으로 지불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세밀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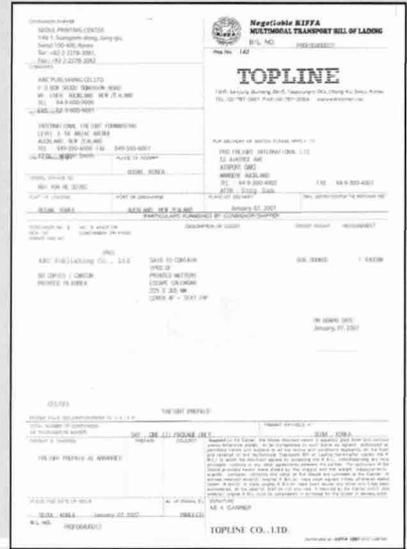
## 인쇄수출 매뉴얼



### 신용장의 당사자

당사자	내용
개설의뢰인 (Applicant)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Import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 지급인), Consignee(수하인), Buyer(매수인)이라고도 함.
개설은행 (Issu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 신용장 대금을 약속하는 은행을 말하며 Opening Bank라고도 함.
통지은행 (Advis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함. 통상 개설은행의 본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 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함.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제 2차 지급약속을 하는 은행으로서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지급 또는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한 은행임. 특히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의 은행과 거래할 시에는 확인 은행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익자 (Beneficiary)	신용장을 수취하는 수출업자로서 보는 각도 및 기능에 따라 Exporter, Seller, Drawer(어음발행인), Consignor(송화인)이라고도 함.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신용장 조건에 의거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지의 은행. 매입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매입은행이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함.
양도은행 (Transferring Bank)	양도가능신용장인 경우 먼저 신용장을 수취한 원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제 3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함. 신용장에 매입, 지급, 인수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에는 이 은행이 양도은행이 되며,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특정은행을 양도은행으로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하여 양도하여야 함.
지급은행 (Paying Bank)	수출지에 개설은행의 지점 또는 예치환거래은행이 있을 경우 개설은행은 수출상에게 이 은행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다는 지시 문구를 신용장에 명기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지급은행이라 함.
인수은행 (Accepting Bank)	수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조건이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선적서류를 수령하는 지정은행이 지급에 앞서 인수(수출상이 제시하는 환어음의 뒷면에 만기가 되면 우리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진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하며 어음의 기간 만료 시 대금지급의 책임을 부담.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이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관 거래관계에 있는 제 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송부하라고 지시하게 됨. 개설은행으로부터 미리 상환수권(Reimbursement Authorization)을 받아 놓은 제 3의 은행은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있으면 그 즉시 상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구좌에서 상환요청금액을 인출하여 매입은행구좌로 입금시켜 주는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은행을 상환은행이라 하며, 일명 결제은행(Setting Bank)이라고도 함.





⑥ L/C 결제 후 수출 시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수입원자재 수입 시 지불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므로 소요량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함.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대행이 가능하다.

###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

① 내국신용장은 원본 신용장을 담보로 국내 원자재 구매 시 활용하며, 내국신용장 발행이 어려울 경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서, 납품하면 수출에 따른 부가세 0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첨부서류 : 직접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출실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공급,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등 기타 형태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또는 수출대금의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구매승인서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무역금융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Local L/C)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승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예치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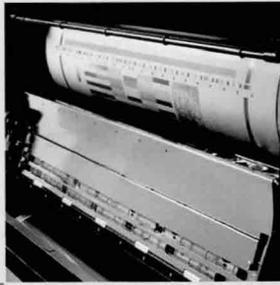
구매승인서제도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 발급절차

구매승인서는 구매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자(수출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며, 다음 차의 구매승인서(2차, 3차, 4차...)는 구매승인서 소지자의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구매승인서 소지자와 공급자 앞으로 발급한다. 구매승인서는 내국신용장과는 달리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 차수에 제한 없이 발급할 수 있다.

### ●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신청서 3부
- 소요량증명서 또는 소요량계산서 1부(원자재구매인 경우에 한함)
-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 기타 공급자의 생산(가공) 능력보유를 입증하는 자료(자사제품 수출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구매승인서상의 공급물품명세서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과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출물품명세서는 발급근거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금액은 원화로 표시하고 외화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부기하는 외화금액은 구매 승인서의 원화



## 인쇄수출 매뉴얼

금액에 발급일 현재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L/C 외 대금 지불방법

#### ① 결제 시기

##### ① 선지급조건(Advance Payment)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조건

- CWO(Cash With Order)방식
- T/T(Telegraphic Transfer) =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 선대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 ② 선적서류 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 : CAD)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운송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

##### ③ 현금결제 (Cash On Delivery : COD)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 결제해 주는 방식

##### ④ 후지급조건 (Deferred Payment)

물품이나 운송서류의 인도가 있는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외상거래인 연불조건

##### ⑤ 분할지급(Progressive Payment)

상품의 대금을 계약서, 선적 시, 도착 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금액씩을 결제하는 방식

#### ② 결제방법

① 송금방식결제 전신환(T/T)이나 우편환(M/T)에 의하여 송금함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② 추심방식결제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매각 또는 추심을 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역환방식을 활용하여 때로는 신용장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기도 한다.

- 무담보어음 결제(Clean Bill of Exchange)

- 화환어음결제(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인쇄물 수출 시 지급 상 관행

①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불충분할 때는 반드시 L/C로 하여야 하나 L/C로 할 경우 불필요한 경비 및 번거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입자나 수출자가 L/C 방식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지불조건은 역시 L/C 조건이다.

② 따라서 점차 신용도가 쌓여 가고 쌍방이 신뢰할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고 경비가 적은 방식을 채택한다. 주로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나 COD(Cash On Delivery)로 선적 후 전자송금방식(T/T)으로 하거나 무신용장 외상거래(Open Credit Terms)를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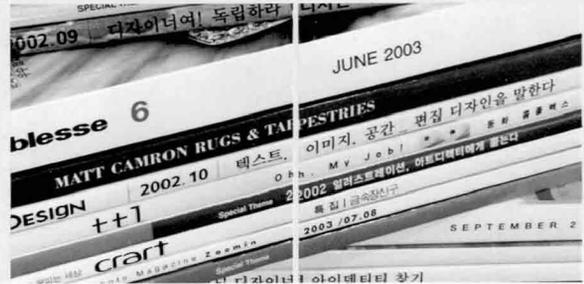


## 계약 및 무역조건에 따른 가격 조건

계약조건	계약방법
가격조건 (Terms of price)	<p>국제무역에는 가격의 구성원리가 국내거래와 상이하다. 즉, 무역에서의 가격에는 국내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대비용(운송비, 보험료, 행정비용, 관세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부대비용의 부담자를 수출상, 수입상 중 누구로 할 것이냐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에서 채택하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진다.</p> <p>따라서 매매당사자가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거래상대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p> <p>즉, 가격조건을 무엇으로 결정했느냐에 따라 비용의 부담자,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가격협상 및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임.</p>
수출입물품의 가격 결정요소	<p>물품의 제조(생산)원가 + 이윤(희망이익) + 요소비용(부대비용)</p> <p>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Inland Freight) ④ 선적항에서의 부두비용 :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Charge) 등 ⑤ 행정비용 : 수출국에서의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E/L) 비용 등, 수입국에서의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I/L) 비용 등 ⑥ 선적비용 : 수출통관비용(Cost of Export Clearance), 수출관세, 선적비(Shipping Charges), 적화비(Loading Charges), 적입비(Stowing Charges) ⑦ 운임(Freight) ⑧ 보험료(Insurance Premium) ⑨ 목적항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harges)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 목적항에서의 부두사용료(Wharfage Charge), 항구세(Port Charge), 창고료(Storage, Go-Down Rent) 등 ⑪ 수입관세(Import Duties) ⑫ 수입통관비용(Cost of Import Clearance) ⑬ 수입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와 보험료 ⑭ 각종 수수료(Commission)와 이자 또는 외환비용(Cost of Exchange)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Petties)</p> <p>선적비, 하역비 부담조건 ① Liner Term(Berth Term) : 선적비 및 양육비 선사부담 조건으로 사실상 운임에 포함되어 FOB조건은 수입자, CIF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 ② FIO(Free In and Out) : 선적비 및 양육비는 선사의 부담 아님(운임에 포함되지 않음) ③ FI(Free In) : 양육비용만 운임에 포함됨. ④ FO(Free Out) : 선적비용만 운임에 포함됨.</p>
무역조건 유형	<p>(1)적출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출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수출국내의 지정선박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 수출상은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무사히 인도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록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수출국내에서 일어났더라도 수출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 FAS, FOB, CFR, CIF ② 운송수단 불문 : EXW, FCA, CPT, CIP, 이중 FCA, CPT, CIP는 특히 복합운송에 적합</p> <p>(2) 양육지 인도조건(Arrival Contract)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지에서 수입상에게 이전되므로 수출상은 운송 도중에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①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 : DES, DEQ ② 운송수단 불문 : DAF, DDU, DDP</p>



# 인쇄수출 매뉴얼



## 무역 방법에 따른 가격 조건 (INCOTERMS 2000)

구분	가격 조건	내용	위험부담 분기점(Seller 기준)	비용 부담 기준
수출지인도 단일가격	EXW	Ex Work (공장인도가격)	공장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Buyer가 수출입 통관비용, 관세, 검사비용, 운임, 보험료 부담.
	FCA	Free Carrier (운송인도가격)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 하에 인도 (수출통관 완료 후)	Seller는 수출통관등 위험부담 분기점까지 비용 부담
	FAS	Free AlongsideShip	매수인이 지정한 선측 (선측인도가격)	Seller는 선측까지의 운반비용, 선적전검사비, 수출관세, 통관비용 부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가격)	본선의 난관을 통과하는 시점	Seller FAS의 비용 및 적하비 부담. Buyer가 화물운임부담과 보험을 커버함.
특수비용 포함가격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가격)	본선의 난관을 통과하는 시점	Seller가 목적항에서의 양화비까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	본선의 난관을 통과하는 시점 (FOB)	Seller는 목적항까지의 모든 운임 및 적화보험료까지 부담.
	CPT	Carrige Paid To (운임 및 보험료 지급 인도가격)	물품과 운송인 (1차 운송비, 중개인 포함)의 관리 하에 인도하는 시점(FCA)	Seller는 선목적항에서 양화시까지의 비용. Buyer는 적화 보험료 부담.(CFR)
	CIP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및 보험료 지급인도가격)	본선의 난관을 통과하는 시점	Seller는 선목적항에서의 양화시까지의 비용. Buyer는 적화보험료 부담.(CFR)
수입지인도 단일가격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가격)	수입국, 제3국 수출국의 국경에서 수입통관 직전상태로 인도하는 시점	양화비를 포함한 위험부담 분기점과 동일
	DES	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	목표항의 본선 내에서 Buyer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는 시점	
	DEQ	Delivered Ex Quay (Duty Paid) (부두인도가격)	수입통관을 완료하여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에 인도하는 시점	Seller는 수입승인비용 및 수입통관관세, 양화비까지 부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납부 반입인도가격)	Buyer가 지정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서 인도하는 시점	Seller는 수입국내에서 지정지점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까지 부담하나 Buyer는 수입통관비용, 관세를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납부 반입인도가격)	Buyer가 지정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까지인도하는 시점(DDU)	Seller는 수입국내의목적지점까지 인도하는 시점(DDU)

〈다음호에 계속〉